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6. 4. 21.(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6. 4. 8.(수)
- 회부일 : 2026. 4. 15.(수) (의안번호 : 26-44)

## 2. 제출이유

- 신규 임용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시보 해제 특별휴가 신설(안 제24조제17항)

##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입법예고: 2026. 3. 5.~3. 25. (제출된 의견 없음)

## 5. 검토보고

###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② 주요 개정내용

#### ○ 주요 내용

- (안 제24조제17항) 시보 해제 특별휴가 신설
- 정규 공무원 임용 후 60일 이내 1일 휴가 사용 가능 규정 신설
-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24조 해당자(임용 제외 또는 특례 대상 등)는 제외

### ③ 기대효과

-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 지원, 공직 이탈 방지 및 인력 안정성 확보,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수준 향상, 합리적 복무제도 정착 효과가 기대됨.

##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 안정성 확보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①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